

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운영회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7호 「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시·도응급의료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

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